

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의2] <개정 2025. 10. 1.>

사육시설 설치기준(제23조의7 관련)

1. 일반 사육기준

가. 물과 음식 제공

- 1)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먹는물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한다.
- 2)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며, 먹이공급량을 기록·보관해야 한다.

나. 적절한 환경 제공

- 1)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적·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(격리시설, 월동시설 등)을 제공해야 한다.
- 2)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온도, 습도, 조명(자연광 포함) 등을 실내·실외, 주간·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.
- 3)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(고래류는 제외한다)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제공하고, 고래류의 경우 수영장을 제공하며, 영장류의 경우 수직·수평 이동이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제공하고,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잠자리,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.

다. 건강관리

- 1) 수의적 프로그램, 사후부검,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, 격리·검역 및 질병관리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- 2)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, 임상치료와 수술, 사전 병리검사,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3)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해야 한다.
- 4) 사육시설등록자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사육시설 청소 등 사육시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
라. 행동관리

- 1)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.
- 2)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일지 등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.
- 3)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 또는 사람과 지나친 접촉으로 대상동물이 사람과 친숙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.

마. 안전관리

- 1)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육사를 지정하여 사육동물의 안정적이고

장기적인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.

- 2)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관리 점검대장을 작성·비치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- 3)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,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, 확인된 모든 안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4) 사육시설등록자는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 일하도록 하며,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.
- 5)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해야 한다.
- 6) 사육시설등록자는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을 사육동물의 탈출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·관리해야 한다.

2.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

가. 포유류

종류	국명	기준		
		한 마리당 사육 면적	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비율	시설 및 장비
영장목	사자꼬리원숭이, 올리브개코원숭이, 다이애나원숭이, 맨드릴, 침팬지, 고릴라, 오랑우탄, 큰긴팔원숭이	- 넓이: 31.5m ² - 높이: 3m	42%	-
	동부콜로부스, 필리핀원숭이(게잡이원숭이), 일본원숭이, 히말라야원숭이, 토크원숭이, 망토개코원숭이, 검은이마거미원숭이, 검은벚긴팔원숭이, 흰손긴팔원숭이	- 넓이: 11.6m ² - 높이: 2.5m	42%	-
	돼지꼬리원숭이, 검은짧은꼬리원숭이, 보닛원숭이, 그리벳원숭이, 브라자원숭이, 사마나원숭이, 모나원숭이, 세줄무늬올빼	- 넓이: 5.3m ² - 높이: 3m	35%	-

		미원숭이, 알락꼬리 여우원숭이, 검은머리 카푸친			
		순다로리스, 흰머리카 푸친, 비단마모셋, 검은술마모셋, 목화머 리타마린	- 넓이: 2.8m ² - 높이: 2.5m	35%	-
		다람쥐원숭이속 모든 종	- 넓이: 1.6m ² - 높이: 2.5m	35%	-
	코끼리목	아시아코끼리	- 넓이 35m ² - 높이 3m - 야외 방사장 넓이 125m ²	70% (야외 방사장 35%)	-
식 육 목	곰 과	말레이곰	- 넓이: 10.5m ² - 높이: 2.5m	35%	- 방사장에 웅덩이 설 치를 권장
		반달가슴곰, 아메리카 검정곰	- 넓이: 21m ² - 높이: 2.5m	35%	- 방사장에 웅덩이 설 치를 권장
		불곰	- 넓이: 32m ²	35%	- 방사장에 웅덩이 설 치를 권장
	고 양 이 과	치타	- 넓이: 24.5m ² - 높이: 2.5m	35%	-
		사자, 호랑이	- 넓이: 14m ² - 높이: 2.5m	35%	-
		스라소니	- 넓이: 8m ² - 높이: 2m	35%	-
		퓨마	- 넓이: 8.4m ² - 높이: 2m	35%	-
		재규어, 표범, 설표	- 넓이: 14m ² - 높이: 2.5m	35%	-
	족 제 비 과	작은발톱수달	- 육상: 넓이 5.3m ² , 높이 2m - 수영장: 넓이 2.1m ² , 깊이	35%	-

			0.6m		
	물 개 과	남아메리카물개	- 육상: 넓이 3.5m ² - 수영장: 수표면 넓이 14m ² , 깊이 1.5m	35%	-
소목	흰오릭스, 바라싱가, 과나코	- 넓이: 35m ² - 높이: 3m	35%	-	
	마르코염소, 목도리페 커리	- 넓이: 14m ² - 높이: 2m	35%	-	
말목	몽골야생말	- 넓이: 35m ² - 높이: 2m	35%	-	
고래목	큰돌고래(태평양돌고 래), 남방큰돌고래	- 수표면 넓이: 84m ² - 깊이: 3.5m	35%	-	

나. 조류

종류	국명	기준		
		한 마리당 사육 면적	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	시설 및 장비
매목	참매, 말뚝가리, 흰꼬 리수리, 참수리, 붉은 허벅지말뚝가리, 달마 수리, 독수리, 큰콘돌	- 길이 및 너 비: 가장 큰 개체의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른 기준 날개폭의 3 배 - 높이: 가장 큰 개체의 비고 제5호 가목에 따른 기준 날개폭 의 2배	길이 50%, 너비 25%	-
파랑새목	붉은코빨새	- 넓이: 5.3m ² - 높이: 2m	35%	-

다. 파충류

종류	국명	기준		
		한 마리당 사육 면적	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면적 비율	시설 및 장비
악어목	알리게이터악어과 모든 종, 크로커다일악어과 모든 종, 인도악어과 모든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육시설 내에서 개체 이동과 선회가 가능한 면적 - 육상: 가로 및 세로 길이는 비고 제5호나 목1)부터 10)까지의 악어의 경우에는 기준 크기의 100%, 그 밖의 악어의 경우에는 성체 크기의 100% - 수면부: 수심은 50cm 이상, 넓이는 육상 면적의 60% 이하(수면부 면적은 육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) 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방형 사육 시설의 경우 높이 1.5m 이상의 안전 펜스를 설치할 것 - 수면부에 수온과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- 자연채광이 확보되도록 할 것 - 모래, 쿠션 등 발이나 다리에 부담이 없는 부드러운 바닥재를 사용할 것
거북목	돼지코거북, 악어거북, 남생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길이: 비고 제5호나 목11)부터 13)까지에 따른 크기란의 등갑길이의 3배 이상 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몸을 말릴 수 있는 노출부를 설치할 것 - 수질 유지를 위한 여과장

		- 너비: 비고 제 5호나목11)부터 13)까지에 따른 크기란의 등갑너비의 2배 이상		치를 설치할 것
뱀목	코브라과 모든 종	- 가로: 1.2m - 세로: 0.6m	10%	-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 일 것 -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
	미안마왕뱀	- 가로: 1.2m - 세로: 0.5m	35%	-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 일 것
	그물무늬왕뱀	- 가로: 2.5m - 세로: 1.2m		
	왕뱀	- 가로: 2m - 세로: 1.2m		
	그린아나콘다	- 가로: 1.5m - 세로: 1m		
	노랑아나콘다	- 가로: 1.25m - 세로: 1m		
	듀메릴보아구렁이	- 가로: 0.4m - 세로: 0.3m	10%	-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 일 것

	살모사과 모든 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로: 1m - 세로: 0.5m 	1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입구에 탈출 방지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한 폐쇄형 사육시설일 것 -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
도마뱀목	그린이구아나, 악어 도마뱀, 물왕도마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로: 1.5m - 세로: 1m 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입구에 탈출 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 시설일 것 - 올라갈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을 설치할 것
	콜롬비아골드테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로: 2m - 세로: 1.5m 	2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입구에 탈출 방지 시설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 시설일 것

비고

1.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소목, 말목, 고래목, 코끼리목 및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.

2.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,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.
3.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·실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갖춘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(코끼리목은 제외한다).
4.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가.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법 제71조에 따라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

나.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물 치료기관

다.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

라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·보호 시설

마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

바.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

5. 위 표에서 "기준 날개폭" 및 "기준 크기"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를 말한다.

가. 기준 날개폭

(단위: m)

국명	날개폭
1) 참매	1.31
2) 말뚝가리	1.37
3) 흰꼬리수리	2.45
4) 참수리	2.5
5) 붉은허벅지말뚝가리	1.21
6) 달마수리	1.9
7) 독수리	2.95
8) 큰콘돌	3.5

나. 기준 크기

(단위: m)

국명	크기
1) 삼악어	2.5
2) 안경카이만	2
3) 미시시피악어	4
4) 뉴기니아악어	3
5) 바다악어	5

6) 나일악어	4
7) 세렝겔악어	3.5
8) 드워프카이만	1.2
9) 난쟁이카이만	1.2
10) 매끈이카이만	1.2
11) 돼지코거북	등갑길이: 0.7 등갑너비: 0.5
12) 악어거북	등갑길이: 1.0 등갑너비: 0.7
13) 남생이	등갑길이: 0.3 등갑너비: 0.2